

# 서울특별시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96
----------	------

2021년 7월 02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김인제 의원 외 19명
- 나. 발 의 일 : 2021년 5월 28일
- 다. 회 부 일 : 2021년 6월 1일
- 라. 상 정 일 :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6월 18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인제 의원)

### 가. 제안이유

- 3·15부정선거에 저항하며 서울지역에서 최초로 일어난 반독재학생 운동이자 4.19혁명의 단초가 된 “3·17민주의거”의 역사적 재조명과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서울시민의 자긍심과 민주의식을 제고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3·17민주의거는 자유당의 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1960년 3월 17일 서울지역에서 일어난 학생의거를 말함(안 제2조).
- 시장은 3·17민주의거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기념일을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기념일은 매년 3월 17일로 함(안 제3조).
- 시장은 기념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거나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음(안 제4조).
-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관련단체에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위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음(안 제5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 (2021. 6. 4. ~ 6. 11.) 결과 :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제정안은 3·17민주의거를 기념하고,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임(안 제1조).
- 특히, 본 제정안은 1960년 3월 15일 자유당 독재정권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전국적인 부정선거에 항거한 3·17민주의거를 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식과 기념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발의된 것으로 보임.
  - ※ 동 조례안은 2016년 8월 19일에 발의(「서울특별시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 - 김인제의원 대표발의)된 바 있으며, 임기 만료로 폐기된바 있음.
  - ※ 3·1민주의거에 따라 기념 사업 등을 위한 「3·17민주의거회」가 창립(2014.4.2.)되어 「기념비 건립 사업(2006년)」, 「3·17민주의거 사료집 제작·배포(2018년)」, 기념식 행사 등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음.
- 3·17민주의거는 4·19혁명보다 약 1개월 앞선 1960년 3월 17일 서울 성남고등학교 학생들이 “부정선거 다시하라”, “의에 살고 의에 죽자”, “백만 학도여 총 쏘기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수도 서울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가두시위로써 4·19혁명의 단초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음.
- 본 제정안은 이를 기념일로 지정하여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민주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민주화운동의 범위와 대상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3·17민주의거가 상위법령에서 정의한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함께 4·19혁명 전후 혁명에 참가한 일련의 단체와 시민들의 의거화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와 별도로 본 제정안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제2조(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1.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10항쟁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활동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민주화운동

- 한편, 국회에서는 박주민 의원(외 15인)이 2017년 2월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3·17서울민주의거를 포함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005747)」을 발의하였으나, 임기만료 폐기(2020.5.29.)된 입법동향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조문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u>3·15의거</u> , <u>4·19혁명</u> ,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u>3·15의거</u> , <u>3·17서울민주의거</u> , <u>4·19혁명</u> ----- ----- ----- ----- ----- ----- ----- -----.

**나. 조례안 세부 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3·17민주의거 기념일 지정운영과 기념식 및 행사를 골자로 목적, 정의, 위탁, 시행규칙을 포함한 총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조문 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3·17민주의거를 기념하고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정의)	- “3·17민주의거” 정의
제3조(기념일)	- 시장은 3·17민주의거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기념일을 지정·운영하고, 기념일은 매년 3월 17일로 함.
제4조(기념식 및 행사)	- 시장은 기념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거나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제5조(위탁)	- 기념식 및 기념행사 추진함에 있어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6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부칙	- 공포일부터 시행

##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3·17민주의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3·17민주의거”란 자유당의 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1960년 3월 17일 서울지역에서 일어난 4·19혁명의 단초가 된 학생의거를 말한다.


- ※ 정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하여 조례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2조는 “3·17민주의거”의 정의를 자유당의 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1960년 3월 17일 서울지역에서 일어난 4·19혁명의 단초가 된 학생의거로써 한정하려는 것인 바, 2·28대구 의거, 3·8대전 의거, 3·15의거와 함께 4·19혁명의 기폭제가 된 중요한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정의하려는 것으로 보임.
- 현행 법령(「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및 신장시킨 활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3·17민주의거” 또한 독재정권에 항거하고자 한 운동으로써 정의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민주화운동의 개념 정의는 법령에서 열거한 의거와 혁명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상위 법령(「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의 노력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고시 등의 방법을 통한 해석 및 적용상 혼란을 줄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행정안전부는 “3·17서울민주의거”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정의조항에 규정된 다른 사건에 버금가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1960년 3월 15일을 전후하여 고등학생이 주축이 된 다수의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였는 바, 유사 민주화운동과의 형평성 및 향후 법 개정 수요, 당해 사건의 상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17서울민주의거 민주화운동 고시 건의에 대한 행정안전부 답변]**



## 행정안전부



수신 3·17 민주의거 기념사업회 (경유)  
 제목 3·17서울민주의거 민주화운동 고시 건의에 대한 답변

---

1. 안녕하십니까? 귀 단체에서 우리부에 접수하신 민원(사회통합지원과-1196)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 단체의 민원은 3·17서울민주의거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민주화운동'으로 고시해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 단체의 민원에 대해 우리부에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1960년에는 3·15부정선거에 항거하는 3·15의거를 기점으로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항의 시위는 4·19혁명으로 이어지는 연속선상의 한 과정으로 판단됩니다.  
 ※ 「국가유공자법」상 4·19혁명공로자는 4월 19일 전후 혁명에 참가한 사람으로 규정

나. 따라서 '3·17서울민주의거'는 4·19혁명에 반영되어 이미 현행법에서 정의하는 민주화운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법령에 별도 규정하거나 고시하는 것은 다른 사건에 버금가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귀 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044-205-326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2) 기념일 지정 및 기념식 및 행사(안 제3조~안 제4조),

- 안 제3조는 시장이 “3·17민주의거” 정신 계승을 위하여 기념일을 지정·운영하며, 기념일은 매년 3월 17일로 하고(안 제3조). 안 제4조는 시장이 기념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거나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안 제3조(기념일)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17민주의거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기념일을 지정·운영한다. ② 기념일은 매년 3월 17일로 한다.

제4조(기념식 및 행사) 시장은 기념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거나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3·17민주의거”에 관한 역사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동 사건을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회복·신장시키기 위한 민주화운동으로 보는데 특별한 이견이 제시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과 민주화운동으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념일 지정과 기념식 등 행사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는 각종 기념일을 엄격히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동 규정에서 “3·17민주의거”가 제외되어 있다는 점(별표 1)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는 2·22민주운동기념일, 3·8민주의거 기념일, 3·15의거 기념일 등 53개를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음(참고자료).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기념일규정 )」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 또한, 「기념일 규정」 제5조에서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영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기념일규정 )」 제5조(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영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제3조와 제4조를 적용한다

- ※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위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하겠음.

### 3) 위탁(안 제5조)

- 안 제5조는 기념식 및 기념행사 추진함에 있어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안 제5조 제1항),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2항).

안 제5조(위탁) ① 시장은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5조는 시장이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민간위탁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례의 입법취지를 사업에 반영하고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또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에 대해서 민간위탁 사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3·17 민주주의거”의 특성을 감안한 민간위탁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다만, “3·17민주주의거”가 상위법령(「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민주화운동에 상응하여 그 의의를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정도의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는 평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민간위탁의 타당성과 서울시 예산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서울시의 예산은 일반시민 모두의 세금으로 편성된 것임에도 상위법령(「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업을 서울시 사업으로 집행해야 하는 당위성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에 다각적인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다.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1960년 3월 15일 자유당 독재정권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전국적인 부정선거에 항거한 3·17민주주의거를 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식과 기념행사 등 역사적 재조명을 통해 민주화운동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서울시민의 자긍심과 민주의식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특히, “3·17민주의거”에 관한 역사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동 사건을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기 위한 민주화운동으로 보는데,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할 것임.
- 다만, 민주화운동의 범위 및 대상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내리고 있는 바, “3·17민주의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행정안전부의 고시를 득하지 못했다는 점, 유사 민주화 운동과의 형평성 및 향후 법 개정 수요, 당해 사건의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

(김인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496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5월 28일

발 의 자 : 김인제, 권수정, 김기덕,  
김재형, 김정환, 김제리,  
김희걸, 박기재, 박상구,  
서윤기, 송명화, 송아량,  
양민규, 이영실, 이태성,  
임종국, 전석기, 최 선,  
홍성룡, 황규복 의원(20  
명)

## 1. 제안이유

- 3·15부정선거에 저항하며 서울지역에서 최초로 일어난 반독재학생 운동이자 4.19혁명의 단초가 된 “3·17민주의거”의 역사적 재조명과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서울시민의 자긍심과 민주의식을 제고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3·17민주의거는 자유당의 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1960년 3월 17일 서울지역에서 일어난 학생의거를 말함(안 제2조)
- 나. 시장은 3·17민주의거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기념일을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기념일은 매년 3월 17일로 함(안 제3조)

다. 시장은 기념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거나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음(안 제4조)

라.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관련단체에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위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음(안 제5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서울특별시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17민주의거를 기념하고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3·17민주의거”란 자유당의 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1960년 3월 17일 서울지역에서 일어난 4·19혁명의 단초가 된 학생의거를 말한다.

제3조(기념일)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17민주의거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기념일을 지정·운영한다.

② 기념일은 매년 3월 17일로 한다.

제4조(기념식 및 행사) 시장은 기념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거나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위탁) ① 시장은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1052700000004
------	------------------

##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김인제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백소영 주무관
접수일 : 2021. 05. 27.	내용문의 : 02-2180-7954
회신일 : 2021. 05. 27.	

서울특별시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 기념식 및 기념행사 비용 =  $\sum_{i=1}^5$ (연간기념식및기념행사비용)<sub>i</sub>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 비용 ≙ 192,100천원

※ 기념식 및 기념행사 비용은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의 5·18 민중항쟁 제41주년기념 서울행사 사업비용을 준용하여 추계

5·18 민중항쟁 제41주년기념 서울행사  
- 기념식, 전시회, 3분 영화제, 국제학술회의

(단위 : 천원)

지출항목	2021년 예산		
	계	보조금	자부담
총계	192,100	184,100	8,000
인건비	인건비 (1,050)	1,050	-
운영비	회의비 (4,000)	4,000	-
	임차비 (5,500)	5,500	-
	행사용품구입비 (5,000)	5,000	-
	안내/홍보물 제작비 (35,000)	35,000	-
	광고비 (3,300)	3,300	-
	기타행사 지원경비 (133,250)	130,250	3,000
	시상 및 포상비 (5,000)	-	5,000

자료 : 「2021년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사업실행계획서(5·18 민중항쟁 제 41주년기념 서울행사,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조도형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무관 백소영

☎ 02-2180-7954

e-mail : thdud36@seoul.go.kr